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 SOC분야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세 화

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 SOC분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상 현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세 화

김세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장 이 석 원 (인)

부 위 원 장 금 현 섭 (인)

위 원 김 상 현 (인)

국 문 초 록

최근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쇄도한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현실과 제도 하에서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행태는 비단 대의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기 지역예산 유치 경쟁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없고 다만 의원의 정치적 명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중 지역예산 증액 규모가 재선 출마 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속하는 2009년~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 중 SOC분야를 추출하여 사업별로 영향이 미치는 지역구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지역구별로 연도별 예산증액에 따른 수혜규모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 현직 국회의원인 출마자의 득표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그 외 독립변수로는 경쟁후보자 수, 이전득표율, 연령, 성별, 학력, 정당 등을 채택하였다.

예산증액규모에 있어 4년간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득표율에의 영향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3년 전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2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증액규모를 각각 독립변수로 번갈아가며 채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득표율에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산증액규모의 4년간 합을 기준으로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의 추가획득효과는 최대 0.52%(총규모 10억원~20억원 구간)에 이르렀고, 또한 예산증액규모가 증가할수록 추가 획득 득표율의 순증가분은 체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인 2012년에 근접할수록 연도별 예산증액규모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0.26~0.73)와 유의미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에 있어 주민이 인지하는 현직의원의 업적이 예산증액규모에 있어서는 선거 시점에 근접할수록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 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경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한 다음 선거의 출마 시 비현직 출마자 대비 갖게 되는 현직효과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 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인 경우 “꼭지예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중 특히 증액과 관련해서는 논의내용을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별 배분 등 심의 당사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예산증액, 현직효과, 선거득표율, 꼭지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
대 총선

학번 : 2012-21920

< 제 목 차 례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예산과정 및 예산심의	3
제2절 의원의 행동 행태와 예산경쟁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재정지출 등의 성과와 선거 결과와의 관계	13
2.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	15
3. 지역 지배 정당 효과	16
4. 선거경쟁도	1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방법	19
1. 분석방법과 자료	19
2. 종속변수	23
1) 득표율	23
3. 독립변수	27
1) 예산증액규모	27
2) 경쟁후보자의 수	31
3) 지역과 정당	32
4) 이전 득표율	33
5) 연령과 성별	35
6) 학력	36

4.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38
제4장 연구결과	40
제1절 상관관계 분석	40
제2절 분석결과	42
제3절 연구결과 요약	47
제5장 결론 및 제언	49
제1절 결론	49
제2절 제언	50
< 참고 문헌 >	53
< 첨부 자료 >	56

< 표 차 례 >

[표 1] 예산과정	9
[표 2] 역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23
[표 3]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 간의 선거구 변동	24
[표 4] 18대 국회의원(지역구)의 19대 총선 출마와 재선 여부 및 득표율 현황 ..	25
[표 5] 재선 출마자의 재선성공확률과 득표율의 지역별 현황	26
[표 6] 분석대상의 사업수와 총 규모 등 현황	29
[표 7] 지역구별 예산증액 규모의 연도별 및 합계 현황	30
[표 8] 19대 총선 시 현직 의원인 후보자들의 출마 시 경쟁후보자 수 현황 ..	31
[표 9] 재선 출마자의 정당별 분포 및 정당 지배 지역의 해당 정당 출마자 분포 ..	32
[표 10]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출마 시 종전 득표율과 금번 득표율의 비교 ..	34
[표 11]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출마 시 종전 득표율과 금번 득표율 변화 ..	34
[표 12]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선 출마자들의 성별 분포 현황	35
[표 13] 재선 출마자의 출생연도 관련 통계량	35
[표 14] 재선 출마자의 학력 관련 통계량	36
[표 15]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등 일람	37
[표 16] 연구의 기본적 가설	38
[표 17] 가설의 내용	39
[표 18]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s 상관계수	40
[표 19] 4년 간 예산증액규모의 합을 독립변수를 할 경우 회귀분석 결과 요약 ..	42
[표 20] 예산증액규모 증가 시 득표율 증가 효과	43
[표 21] 회귀분석 결과 요약	46
[표 22] 연구의 검증 결과	48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쪽지예산 관행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쇄도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현실과 제도 하에서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행태는 비단 대의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 원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자기 지역예산 유치 경쟁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없고 다만 의원의 정치적 명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출마 후보의 소속 정당에 따른 지역 간의 뚜렷하고 강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모든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란 변수의 영향은 선거연구의 초미의 관심분야로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시도되었으며 한국의 선거를 설명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박찬욱 외 1996).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이라는 변수의 압도적 영향력에 가려져 국회의원 선거연구에 있어 다른 중요한 주제의 변수들이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지역 변수의 영향이 적을 수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권 및 강원 제주 등의 기타 지역에서는 연구 주제에서조차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다.

또한, 현직의원들이 재선 출마 시 갖게 되는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의 원인에 대하여도 무엇이 그러한 이점을 갖게 만드는지 원인에 대

한 분석이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위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민원 해결 또는 숙원 사업의 조기추진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업적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선거 시 긍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현직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의 일종으로 예산증액을 직접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의원의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선호현상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역예산 증액 노력이 이후 총선에서 재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대 현직 국회의원들의 SOC분야에 대한 지역예산을 증액하려는 노력과 이후 19대 총선에서의 출마 시 득표율과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8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4년의 임기 중 해당 지역구와 관련된 SOC분야의 예산 증액 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와 이들의 19대 총선 등락 결과를 연결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자세한 자료의 획득방법과 내용 및 변수 등의 설정·조정내용은 후술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예산과정 및 예산심의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

행정부는 헌법 제 54조 2항에 의해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므로, 의회의 간섭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 예산수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 중 각 부처로부터 신규 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참고로 하여 4월 중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수립, 각 부처에 통보하는데,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해 부처별 지출한도를 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향식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향식 예산제도(top-down)에 의한 것이다. 지출 한도에 따라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6월 30일까지 송부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9월간 본격적인 예산안 수립 절차에 도입, 각 부처와 의견을 조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친다.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0개월 남짓이 예산안 수립 기간이 된다.

본회의 보고 및 정부의 시정연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및 국정이념 등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는 예산안 심의의 필수적인 요건이다(국

회법 제84조). 시정연설은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안의 국회제출 법정기한인 10월 2일 이후 즉시 행하여야 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별도의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며, 추가경정예산은 안건이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가 개의된 즉시 행한다. 시정연설은 대통령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4차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2003년 노무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무총리가 대독하였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증액을 의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제84조제5항에서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이 경과하도록 동의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비심사는 아래의 각 절차를 거친다.

① 안건 회부

상임위원회에는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만이 회부된다. 예산총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며 기간 내 종결되기 전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이 해당 안건의 개요와 사업계획, 집행실적 등을 설명한다. 예산에 관련된 안건은 일괄해서 상정하고 제안 설명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문위원이 예산안의 개요와 배경,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대체로 검토의견만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첨부 형태로 기재하고 있다.

④ 정책 질의 및 대체토론

상정된 부처의 예산안 전체에 관한 사항 및 부처의 시책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부처의 장 또는 차관이 답변한다.

⑤ 소위원회 심사

정책 질의가 끝나면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7인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문별 실질적인 심사를 행한다. 소위원회의 안은 상임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그대로 채택됨이 보통이다.

⑥ 전체위원회 의결

안건의 처리에 대한 여·야간 의견 대립 시 토론 및 표결을 행한다. 대개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소위원회 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토론·표결하는 예는 적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견을 첨부하는 조건부로 통과될 수도 있다.

⑦ 심사 보고

예비심사가 종결되면 소관부처별·안건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종결된다. 의결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 형태로 첨부되어 의장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① 안건 회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예비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의장은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4조 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경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행하는 데 그 내용은 전년도 경제운용시책, 재정운용의 방향 및 예산안의 중점 사항 등으로 대통령의 시정 연설보다 더 구체적이다.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문위원은 정부의 제안 설명 직후에 안건별로 안건 개요, 배경,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검토 후 보고한다. 이는 예결위 위원들의 심사에 있어서 1차적인 판단자료가 된다.

④ 종합 정책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정책 질의는 모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상임위원회 때와는 달리 정부의 시책방향, 재정, 경제정책, 외교, 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과 유사하게 운용한다.

⑤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

예산안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종합 심사에 있어서 예산안의 조정원칙을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책 질의, 부별 심사 시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관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다.

⑥ 전체회의 의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작성한 단일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로 위원회 안을 확정한다.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안에 반대하여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할 수도 있다.

⑦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장은 이를 확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 심의 의결

① 본회의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의하여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결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개정 후 첫해인 올해 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해야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원회 심사에 돌입했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 보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예산안의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여당 소속 간사가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③ 토론 및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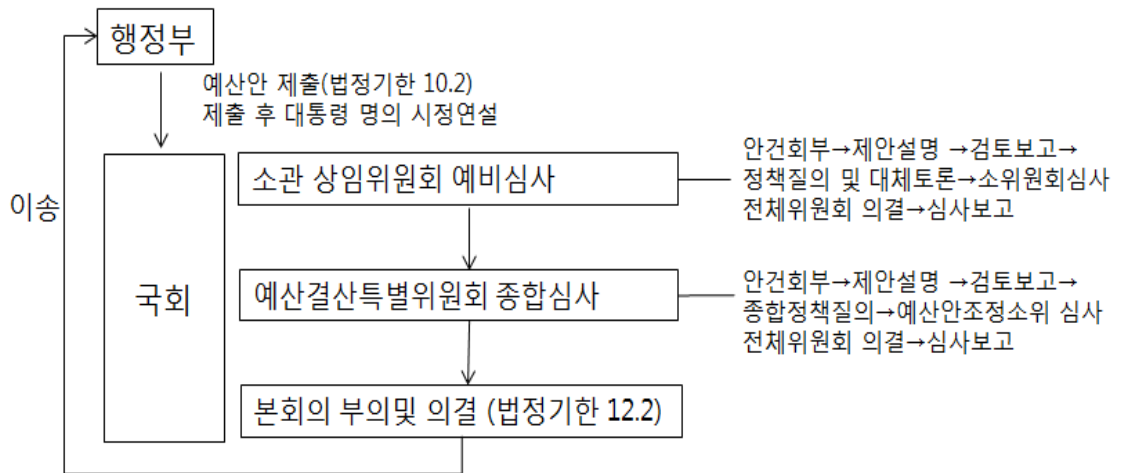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을 그대로 확정함이 관례이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질의 및 찬반토론을 수행하고,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 후 안건 이송 시 서면으로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책질의, 부처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수정의견 등을 참작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경제전망, 정치적·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조정한다. 예산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정부 이송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정부로 이송한다. 국회로부터 예산이 이송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고한다. 예산의 공고에는 전문을 붙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며, 관보에 게재한다.

이상의 절차와 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산과정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나라살림인 예산의 편성권은 행정부인 정부에,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입법부인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는 무제한적 삭감권한을 가지는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비대칭적 수정권한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회회가 일차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가령 SOC분야의 예산은 담당 상임위원회회회인 국토교통위원회회회가 예비심사를 수행한다), 상설특별위원회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회가 이를 한데 모아 종합심사를 통해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조정을 하는 2단계 심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회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와는 달리 미시적 입장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만을 심사하는 관계로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안의 수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액위주로 수정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증액지향적인 경향은 의원들이 예산증액을 통하여 지역 선거구에 정치

적 이득을 얻고 행정부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재원대책도 없이 증액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유장희, 2007, p.16)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국가 전반의 예산과 재정운용에 대한 판단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구나 이익단체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세부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옥동석, 2010, p.65)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는 관련 이해집단의 포획에 상대적으로 보다 노출되어 관련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예산조정내역을 총지출 관점에서 조율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 못지않게 세입의 범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여야 간의 세입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양쪽을 모두 삭감하고 동시에 그 액수도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박영희·김종희, 2008, pp.207~208.)

제5공화국 초 제1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심의를 전담하게 되었다가 제11대 국회 후반기(1983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가 부활되었다. 폐지 시의 이유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행정부처와 유대관계가 있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쉽고 그 결과 증액 지향적이며, 이원적 예비심사는 관계장관의 답변,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정책질의, 부별심사, 계수조정 등이 중복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안의 전 항목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부분이익을 옹호하게 되어 전체성이 결여된다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안 수정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과정 상의 파행 역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쪽지예산’이다. 각 당

의원들마다 본인 지역구 관련 예산을 ‘썩지’ 형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회에 참가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물밑 작업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증액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 것은 물론으로, 예결위원장이나 간사, 정당 원내대표 등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해마다 예산심사 후 언론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강장석, 2012)

제2절 의원의 행동 행태와 예산경쟁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지역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의원들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익을 희생하는 등 국익을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명성을 획득하는데 주력하며,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고 본다. 이는 특히 예산의 지역 편중적 특성을 지닌 SOC분야의 경우 보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가의 재정으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추진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당사자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보다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편익이 클 경우 지역사업의 추진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들이 각종 선거에서 어떠한 후보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해당 지역의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확대 추진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를 유

치 또는 확대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보다 높은 선호를 보낼 것이다. 이는 비단 호남고속철도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만 국한되기보다는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민원성 숙원 사업을 조기 추진하거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은 거주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가 투표 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또한 이를 유치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의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지역발전 공헌의 기대감 등을 통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투표율을 높여 결국 그 의원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의원들의 해당 지역예산의 유치경쟁을 불러올만한 유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가된 지역예산이 그 즉시 혜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가된 사업이 집행되어 도로 등의 SOC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이용함에 따라 누리게 될 혜택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증가와 이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의원들의 지나친 홍보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어 선거에서 예산증가가 큰 영향을 주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의원들 간의 과도한 예산경쟁을 유발시킨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지역구의 이해를 벗어난 비례대표로만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과도한 예산경쟁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자기 지역예산 늘리기에 보다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구 챙기기가 재선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예산 증액경쟁을 없애고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정책제안을

내놓기에 앞서 이러한 지역예산경쟁이 해당 지역의 재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재정지출 등의 성과와 선거 결과와의 관계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재선 도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비나 경제성장비 등 정부지출의 증가가 연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었고(배상석·강주현(2007)), 행사축제 등의 비율이 재선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최병호·정종필(2007)).

김상헌·김형아·김나영(2008)은 2006년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 종합점수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단체장보다 방만하게 운용한 단체장이 오히려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으며, 박기백·김현아(2005), 최승범·이환범(2006), 김상헌·김민경(2011)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역구와 후보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재훈·이호준(2012)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재정지출이 해당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김재훈·이호준(2012)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재정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예산의 지방유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김재훈·이호준(2012)의 경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독립 변수로 삼았으나,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현직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오히려 작은 규모의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는 등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미시적 시간 단위에서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대규모 사업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선거 시 선호성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대규모 사업일수록 국회의원 또는 지역자치단체장의 유치 노력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별로 예산이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공공투자사업 유치노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해외에서는 Happy(1992)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시장의 개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캐나다의 실증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Lowry(1998)는 예산 크기의 변화와 균형예산의 정도가 지방의회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Brender(200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고가 좋을수록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나 성과 전체를 놓고 선거에서의 재선과의 관계를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의 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C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당초 정부가 편성한 해당 지역의 예산을 지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예산경쟁 등을 통한 노력으로 증액이라는 가시적 성과물로 이루어낸 사실이 당초의 달성목적인 실질적 정치력의 연장 즉, 재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소위 “쪽지예산”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

현직자 효과 역시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문 가운데 현직자 효과를 지적한 논문들은 수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자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김도중·김형준 2000)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이 현직자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박찬욱 1993; 황아란 1996, 1998; 윤종빈 2002; 이갑윤·이현운 2000; 임성학 2005; 김석우 2006;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8).

현직자 효과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 지역사업이나 민원 해결 등에 따른 업적, 선거 경험에 따른 이점 등을 들 수 있다. Strokes & Miller(1966)는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현직에 대한 인지의 편의성이 긍정적 평가를 낳아 현직의 득표율이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직효과는 현직에 있음으로 인하여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이나 업적 등을 결과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직에 있는 자체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예산을 증액한 규모를 독립변수로 볼 경우 이 현직효과 자체를 고려하게 되면 예산증액 규모가 현직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므로 예산증액 규모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적 등을 구체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현직효과를 변수에 넣지 않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3. 정당 공천

우리 나라 정치풍토의 특성 상 정당의 공천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득표율 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준 김상현·김형아·김나영(2008)의 연구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재선 여부 간의 관계를 밝혀낸 김재훈·이호준(2012)에서도 공천 여부를 고려한 것을 반영하였다. 유권자가 투표 시 후보에 대한 개별적 선호가 뚜렷하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첫째 방법이겠으나, 뚜렷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선택 방법은 대부분 소속 정당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특히 한꺼번에 여러 명을 선택하여야 하는 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초의회 등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획득하여 개별적으로 투표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고 볼 때 여당 1번, 야당 2번 이후, 무소속이 가장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번호부여 형태 등도 이러한 정당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당 중심의 투표형태는 한국 고유의 지역주의 정서와 결합되면 그 영향이 증폭될다 할 것이다. 지역주의라 함은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주의 색채는 영남과 호남 간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충청권은 최근 부활하고 있지만 아직은 약한 편이다. 이러한 지역 지배 정당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들(강원택 2002, 2003; 김욱 2006, 정구중 2006, 가상준 2008)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거에서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강명세 2001, 이갑윤 2002, 조진만 외 2006, 송근원·정봉성 2007). 이러한 경우 어떤 지역에 어떤 당의 후보가 나오느냐는 재선의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4. 선거경쟁도

과거 선거가 치열했는지에 따라서 즉, 선거경쟁도가 치열했던 경우 다음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분명 영향력이 있으나 그 방향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과거 선거가 치열할수록 현재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증가한다는 시각이다(윤종빈 2006). 이러한 시각은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주목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즉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일수록 임기 동안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에 따라 이러한 의정활동이 득표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박찬욱(1988)도 1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과거 선거에서 2등과의 득표 차이가 작았던 의원일수록 재선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지역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윤종빈(2000 그리고 2006)도 15대와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선거경합도가 치열했던 현직 의원일수록 지역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정택(2007)과 엄기홍(2012)의 연구는 과거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던 국회의원일수록 현재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택은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표차이가 커서 쉽게 당선된 현직 의원이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고, 엄기홍은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정치후원금이 그렇지 않은 도전자에 비하여 더 많이 전달되었고 현재 선거에서 재출마한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경합도가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선거경합도로 인하여 임기 중 지역구 활동

을 열심히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가 지역구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경합도를 직접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것은 주요 독립변수인 예산증액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거 경합도는 별도의 독립변수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편성 및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기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선거 출마자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하되, 임기 동안의 예산 증액 규모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결과 본회의에 제출하는 수정안은 18대의 활동기간에 속하는 2009년 예산안부터 2012년 예산안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 과정에서 기준을 삼거나 가정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기술한다.

선거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8대 국회의원을 표본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즉,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18대 회기 중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8대 회기 중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경우도 19대에 출마한다면 표본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재선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였다.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효력이 확정되나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수정안을 변경 없이 통과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바 국회의원의 예산경쟁에 따른 예산 증액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현재 주제로 삼고 있는 SOC분야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통상 10~15명 수준에서 구성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구체적 증액과 감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여기서 수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큰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것이 관례였던바 소위 구성 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감액과 달리 증액에 있어서는 각 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 증액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대표하는 지역의 전체적 증액을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소위 위원들을 통하여 각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민원 사업 관련 예산들을 반영하도록 부탁하는 비공식적 예산경쟁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 임명 여부와 해당 임기에만 근거하여 예산증액에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산경쟁 외에 비공식적 예산경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위원 임명 여부와 임기는 이번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예산증액 사업과 규모 및 해당 지역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 아래의 가정과 기준으로 하였다.

예산 증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회가 증액한 것으로 명시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가령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이후 일부 금액을 다시 증액하는 경우 감액보다 증액의 금액이 적으면 순 증감에서는 감액이나 증액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아 여타의 증액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증액의 정의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상 증액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상 증액 즉, 정부에 이송되는 수정안 내의 증액으로 보았는데, 이는 상임위원회가 증액편향 경향이며 증액 한도에 대한 고민이 없으므로 무차별적 증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단계에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간 증액 정도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 미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산증액 사업은 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증액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행사를 명시할 때 내역사업까지 포함하여 증액 내용에 기재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범위를 SOC분야로 한정하였는바 물론 농림, 산업, 환경, 복지 분야 등도 지역에서 관심갖는 주요 분야이기는 하나 SOC분야의 경우 증액사업에 대한 관련 지역이 보다 뚜렷하게 명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외는 지역과의 연관성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자료의 방대함과 주관적 판단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SOC분야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12대 분야의 SOC분야로 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중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국한되어 정책적 지원 측면이 크고 또한 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19대가 최초이기 때문에 재선 여부를 따져보는 현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예산증액 사업의 소관은 국토해양부(당시 국토교통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국토해양부의 예산증액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정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 특정 지역과 연관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제외의 사유와 내역은 이후 후술하기로 한다.

또한,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기준 수혜지역을 지역과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

사업 영향권의 범위를 일부 재조정하였다. 첫째,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선거구 또는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 대다수이므로 여러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을 시·중점만 영향권으로 보는 경우 분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아 경유지 등에 대해서도 사업 증액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예산 증가금액을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전액을 혜택으로 볼 것인지, 지역 수로 나누어 전 지역에 분할된 금액을 혜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후자를 택하였다. 그 이유는 전 지역에 전액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예산이 증액된 SOC가 공공재임을 고려하여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본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데 반하여 호남고속철도 등과 같이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은 금액에 비례하여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인하여 증액 규모가 대규모이면서 여러 지역이 동 금액을 공유함에 따라 특정 지역군의 평균적 증액 규모가 타 지역들과 커져 차이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특정지역에 설치·지급되는 사업의 경우도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분석의 간편화를 위하여 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역구가 여러 개로 분화되어 실제 증액된 사업의 영향권을 광역시 등이 아닌 아래 단계인 지역구까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지역구 아닌 해당 지역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실제로 선거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가급적 해당 지역구만을 선정하지 않고 폭넓게 주변 지역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구분단위를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

1) 득표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지역 예산 증액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므로 이 중 비례대표는 제외하였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19대 선거결과 중 현직 국회의원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 역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구분		선거일	의석수	지역구	비례대표
17대	2004~2008	2004.4.15	299	243	56
18대	2008~2012	2008.4.9	299	245	54
19대	2012~2016	2012.4.11	300	246	54

이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선 출마 시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한 경우는 현재 지역구의 예산 증액이 새로운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의 재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선거구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 기존 의원의 재선에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18대 회기 동안의 의원 활동에 분할된 선거구의 주민들이 모두 반응한다고 보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선 결과를 살펴보는 대상군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둘째, 2개 이상의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되는 경우로 전남 1개와 경남 1개였는데 이들은 특정 정당에의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통합하는 경우 정당공천 등을 통하여 2명이 아닌 1명의 후보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아 출마한 의원이 재선 출마에 도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출마하지 않거나 공천 경선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는 재선출마에 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각 포함, 불포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신설된 지역구인데 세종자치시가 유일하였다. 이 경우 재선을 위한 출마를 전후로 한 연속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포함하기로 하였다.

[표 3] 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 간의 선거구 변동

유형	18대	19대	비고
분할	경기도 파주시 (황진하 의원)	경기도 파주시 갑 (윤후덕 의원)	황진하 의원의 재선 출마 및 재선 인정
		경기도 파주시을 (황진하 의원)	
	강원도 원주시 (박우순 의원)	강원도 원주시 갑 (김기선 의원)	불출마에 포함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 의원)	
통합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낙연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의 재선 출마 및 재선 인정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구례군 (김효석 의원)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 (여상규 의원)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상규 의원)	여상규 의원의 재선 출마 및 재선 인정
	경상남도 사천시 (강기갑 의원)		
신설	-	세종자치시 (이해찬 의원)	신설이므로 불인정

상기와 같이 선거구의 불일치 현상을 조정한 결과 재선에의 출마 여부를 포함한 전체 표본은 243명으로 출마 여부, 재선 여부 및 득표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43명 중 재선을 위한 출마자는 총 156명으로 이들의 평균 득표율은 49.9%였다. 이들 중 당선자는 69.9%인 109명으로 이들의 평균 득표율은 59.0%였으며, 낙마자는 30.1%인 47명으로 이들의 평균 득표율은 35.5%였다.

[표 4] 18대 국회의원(지역구)의 19대 총선 출마와 재선 여부 및 득표율 현황

(단위: 명, 개, %)

구 분	당선	낙마	기타	합 계
출마 (득표율)	109 (59.0)	47 (35.5)	-	156 (49.9)
불출마	-	-	87	87
합 계	109	47	87	243
선거구 조정				3
19대 총선 대상 지역구 수				246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선 출마자들의 지역별 득표현황과 재선성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권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가 8명 출마자 중 7명이 재선에 성공하여 87.5%의 재선성공률을 보인 반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평균 70%를 크게 하회하는 특징을 보였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괄하는 경상권의 경우 경남의 80%를 제외하고는 재선 출마자가 100% 재선에 성공하였고, 전라권 역시 평균을 다소 웃도는 재선성공률을 보였다. 충청권 역시 충청북도가 재선성공률을 83% 기록하는 것과 달리 대전과 충남에서는 50%를 하회하고 있었고, 제주도의 경우 3명 중 모두 재선에 성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 재선 출마자의 재선성공확률과 득표율의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재선성공		재선실패		출마평균		재선확률 (A/C)
		득표율	명수(A)	득표율	명수(B)	득표율	명수(C)	
수도권	서울특별시	52.1	11	37.4	15	43.6	26	42.3
	경기도	54.7	22	43.8	13	50.6	35	62.9
	인천광역시	55.0	7	12.3	1	49.6	8	87.5
경상권	부산광역시	54.1	9	-	-	54.1	9	100.0
	대구광역시	63.6	5	-	-	63.6	5	100.0
	울산광역시	55.5	4	-	-	55.5	4	100.0
	경상북도	62.6	10	-	-	62.6	10	100.0
	경상남도	55.0	8	37.4	2	51.5	10	80.0
전라권	광주광역시	60.0	5	18.6	2	48.2	7	71.4
	전라남도	61.5	8	43.9	1	59.5	9	88.9
	전라북도	55.3	4	35.6	2	48.7	6	66.7
충청권	대전광역시	53.5	2	29.7	3	39.2	5	40.0
	충청북도	54.5	5	43.4	1	52.7	6	83.3
	충청남도	44.9	3	24.6	4	33.3	7	42.9
기타	강원도	58.6	3	23.2	3	40.9	6	50.0
	제주도	50.1	3	-	-	50.1	3	100.0
총합계		56.0	109	35.5	47	49.9	156	69.9

3. 독립변수

1) 예산증액규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먼저, 본 연구의 초점인 의원임기 4년 동안 SOC분야의 지역예산 증액규모 합계(이하 “예산증액규모”)를 선정하였다. 이는 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 상의 증액 규모를 바탕으로 조정된 지역별로 이를 배분하여 4년 간의 증액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또한, 각 연도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또한 각 연도별 증액 규모 간의 공분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각 연도별 증액 규모를 각각 별도의 독립변수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시 삭감은 가급적 반영하되 증액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고려가 되지만, 예비심사 결과 증액되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정부안에서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시 증액편향적 경향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와 방향성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심사 결과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초 SOC분야의 예산 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상임위원인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만이 예산증액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타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같은 당 위원들에게 예산증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예산증액 시 반영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예산증액규모를 별도로 독립변수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기술한다. 예산증액 규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재직이 미치는 영향은

추후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수정안의 경우 감액과 증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지역의 감액과 증액 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감액은 특정사업의 전면폐기가 아닌 일부 규모 축소가 대부분인 반면, 증액은 향후 확대될 예산의 소위 “끼워넣기” 예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원의 정치적 홍보에 증액만이 절대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때 감액규모가 재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감액은 고려하지 않아 순수한 증액 규모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선 4년간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 SOC분야(국토부 소관)에 대한 예산증액 사업수와 총 규모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논문의 가장 뒷부분에 첨부하기로 한다.

먼저 세종시에 국한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의 증액 건을 제외한 SOC분야의 국토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수는 2009~2012년의 총 4년간 576개이며 총 2조 2,828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연 평균 144개의 사업에 5,707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지역과 무관한 사업과 지나치게 많은 지역, 즉 초광역권 증액 사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정지역과 무관한 사업은 4년간 총 60건으로 총 3,949억원이었고, 초광역권 증액 사업은 4년간 총 5건(중복 포함)으로 총 1,660억원이었다. 특정지역과 무관한 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기본경비, 해양정책 및 산업화연구, 기관사 인력양성 등과 같았으며, 초광역권 증액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으로 2개 이상의 도에 걸쳐 여러 시군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 한정하였다. 참고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10년과 2012년 예산에 각각 600억원과 300억원이 증액되었고,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은 2011년 예산에 7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2년 예산에 50억원이 증액되었다.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확정된 예산증액 사업수는 4년간 총 511개에 걸쳐 총 1조 7,220억원이었고, 연 평균 128개의 사업에 총 4,305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의 평균 증액규모는 34억원 수준이었다.

[표 6] 분석대상의 사업수와 총 규모 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평균
SOC 분야 (국토부) (A)	예산증액 사업수	114	129	144	189	576	144
	예산증액 총 규모	436,292	665,821	637,979	542,749	2,282,841	570,710
	사업별 평균 증액규모	3,827	5,161	4,430	2,872	3,963	3,963
제외 (B)	특정지역 무관 사업수	13	14	16	17	60	15
	특정지역 무관 증액규모	109,282	182,206	55,249	48,150	394,887	98,722
제외 (C)	초광역권 증액 사업수	0	2	1	2	5	1
	초광역권 증액규모	-	61,000	70,000	35,000	166,000	41,500
분석대상 (A-B-C)	예산증액 사업수	101	113	127	170	511	128
	예산증액 총 규모	327,010	422,615	512,730	459,599	1,721,954	430,489
	사업별 평균 증액규모	3,238	3,740	4,037	2,704	3,370	3,370

그 다음, 분석대상인 예산증액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이 미친다고 본 지역구별 예산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기간인 2009~2012년 예산에 증액규모의 합이 가장 큰 지역구의 예산증액규모 즉, 최대값은 966억원이었으며, 이 지역구는 전남 여수시을(주승용 의원)로 2012년에 있었던 여수 국제 엑스포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에 2년간 800억원이 증액지원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예산증액 규모가 가장 컸던 지역구를 살펴보면 2009년은 충남 아산시(이명수 의원)가 197억원, 2010년과 2011년은 전남 여수시을(주승용 의원)이 310억원과 547억원이었고, 2012년은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박민식 의원)이 129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7] 지역구별 예산증액 규모의 연도별 및 합계 현황

(단위: 백만원)

변수설명	09년 예산증액	10년 예산증액	11년 예산증액	12년 예산증액	4년간 예산증액 합
최대값	19,700	31,000	54,650	12,856	96,600
최소값	-	-	-	-	-
평균	1,366	1,402	1,949	1,705	6,421
분산	8,444,524	11,376,009	27,051,254	6,416,117	99,961,639
표준편차	2,906	3,373	5,201	2,533	9,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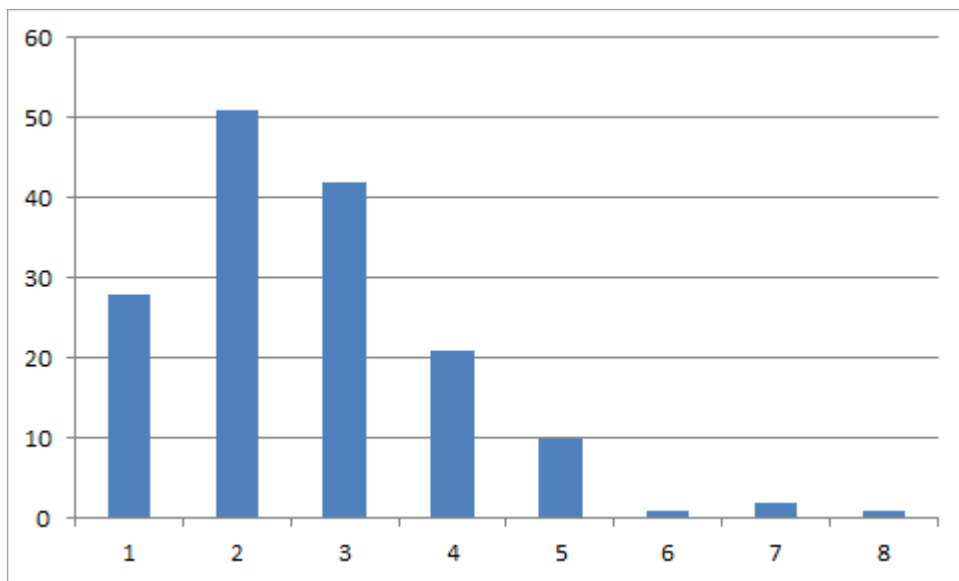
2) 경쟁후보자의 수

득표율은 전체 100%를 놓고서 후보자들끼리 나누어가지는 고정합 게임이라고 볼 때 몇 명에서 나누어 가지는지 즉, 후보자가 몇 명인지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소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인을 제외한 경쟁후보자 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8대 국회의원인 후보자들 총 156명 중 경쟁후보자가 1명인 경우 28곳, 2명인 경우 51곳, 3명인 경우 42곳이었고 4명인 경우 21곳 등 최대 8명인 곳도 존재하였다.

[표 8] 19대 총선 시 현직 의원인 후보자들의 출마 시 경쟁후보자 수 현황

(단위: 명)



3) 지역과 정당

예산증액규모 외의 독립변수로는 기타 재선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사정상 정당공천 여부가 재선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득표율 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준 김상현·김형아·김나영(2008)의 연구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과 재선 여부 간의 관계를 밝혀낸 김재훈·이호준(2012)에서도 공천 여부를 고려한 것을 반영하였다. 다만,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 정치 풍토를 고려하여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매우 강세를 갖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남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경우와 호남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경우는 여타의 정당 변수와 다르다고 보아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여 지역더미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재선 출마자 총 156명 중 새누리당 출마자는 82명, 민주당 출마자는 47명, 기타는 27명이어서 새누리당의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의 우세 정당 출마자도 새누리당이 35명으로 42.7%, 민주당이 15명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9] 재선 출마자의 정당별 분포 및 정당 지배 지역의 해당 정당 출마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기타	합 계
정당	82	47	27	156
지역*정당	35 (42.7)	15 (31.9)	-	50 (32.1)

4) 이전 득표율

후보자가 갖는 고유한 특성, 즉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갖는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당선 당시의 득표율을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재선을 위한 출마 시의 득표율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재선 출마자의 경우 이미 이전 선거의 득표율이 존재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물론, 선거 이전의 정치 또는 정치 외 활동 뿐만 아니라 경력,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득표율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 가정에서 포함한 것이나, 이전 선거가 갖는 경쟁후보자 수, 정당 공천 유무, 당시의 정치환경 등의 변수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된다는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측정 및 재반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동 연구의 목적이 예산증액규모를 주 독립변수로 하고 있는바 예산증액규모가 임기 중의 현재 활동에 대한 일종의 측정 변수 역할을 한다면, 이전득표율의 경우 과거에 대한 측정 변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전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출마 시 득표율을 비교하면, 18대 득표율의 평균은 53.95%로 최대값 88.74%, 최소값 27.67%이었으며, 19대 득표율의 평균은 49.86%로 최대값 83.46%, 최소값 4.29%였다. 18대 득표율이 19대 득표율보다 평균이 높은 것은 분석 대상이 18대 득표율은 당선자의 평균이고, 19대 득표율은 재선 출마자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값은 유사한 것과 달리, 최소값의 경우 18대 27.67%에서 19대 4.29%로 낮아진 것은 18대의 최소값 역시 당선자이나, 19대의 최소값 4.29%는 낙선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소값 4.29%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강용석 의원(18대, 당시 득표율 45.95%)이 19대 총선에서 기록한 득표율로 18대에는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19대에

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10]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출마 시 종전 득표율과 금번 득표율의 비교

(단위: %)

구분	19대 득표율	18대 득표율
최대값	83.46	88.74
최소값	4.29	27.67
평균	49.86	53.95
표준오차	14.17	11.29

18대 국회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 시 종전 득표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본 156명 중 상승인원이 65명, 하락인원이 91명으로 평균적으로 4.09%의 득표율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8대는 당선자의 득표율인 반면, 19대는 재선 출마자 전체의 득표율이므로 현직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다. 또한, 최대상승폭은 33.5%p, 최대하락폭은 60.67%p로 최대상승폭은 전남 무안군신안군 이윤석 의원이 18대 30.89%에서 19대 64.39%로 33.5%p의 상승폭을 달성하였다. 최대하락폭 60.67%p는 광주광역시 북구을 김재균 의원이 통합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정당 공천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여 18.56%를 기록하였으며, 18대 당선 당시의 득표율은 79.23%였다.

[표 11]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출마 시 종전 득표율과 금번 득표율 변화

변화 인원 (단위: 명)		변화 폭 (단위: %p)		
상승	하락	최대상승폭	최대하락폭	평균변화량
65	91	33.5	△60.67	△4.09

5) 연령과 성별

지역주민들이 후보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후보의 연령과 성별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보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지나치게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인맥이 부족하다거나 열정적으로 일하기에 체력이 부치거나 하는, 비록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연령과 성별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감안하여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로 보았다.

재선 출마자 총 156명 중 남성이 148명, 여성이 8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표 12]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선 출마자들의 성별 분포 현황

(단위: 명)

남성	여성	재선 출마자 합
148	8	156

18대 국회의원 중 19대 총선에 재선을 위하여 출마한 후보자 156명 중 최소 연령은 41세(72년생)이고 최고령은 76세(37년생)이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57.7세(55.3년생)의 나이였으며 표준오차는 6.92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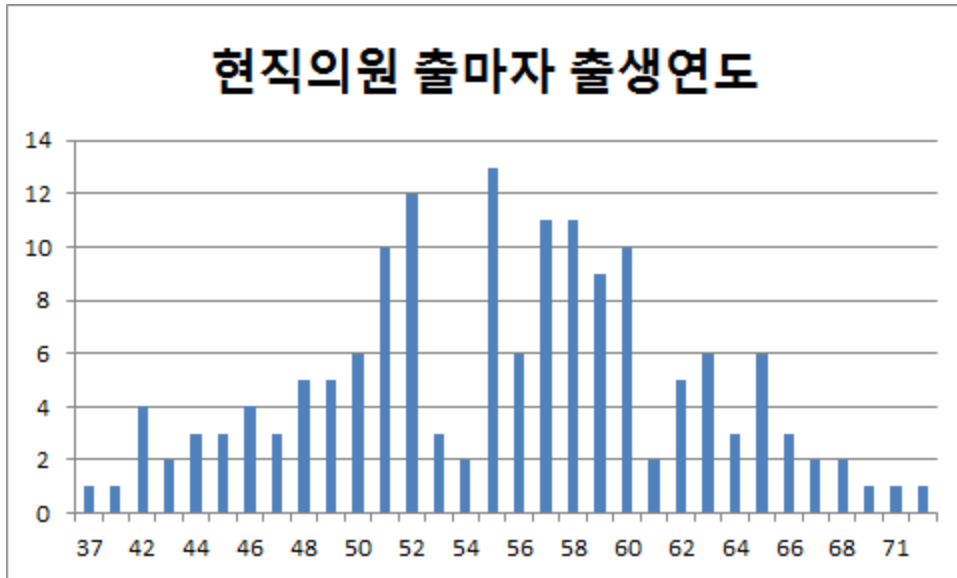
[표 13] 재선 출마자의 출생연도 관련 통계량

(단위: 명, 1900년, 세)

인원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오차
156	37 (76)	72 (41)	55.3 (57.7)	6.92

*괄호 안은 2012년 선거 시점의 나이를 의미

현직의원으로서 재선을 위하여 출마한 후보자들의 출생연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학력

한국사회에서 갖는 학벌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력 또한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대학 졸업한 후보자는 62명, 대학 중퇴 또는 퇴학은 1명, 석사나 박사 등 기타는 93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재선 출마자의 학력 관련 통계량

(단위: 명)

대학 졸업	대학 중퇴/퇴학	석사/박사 등	합 계
62	1	93	156

[표 15]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등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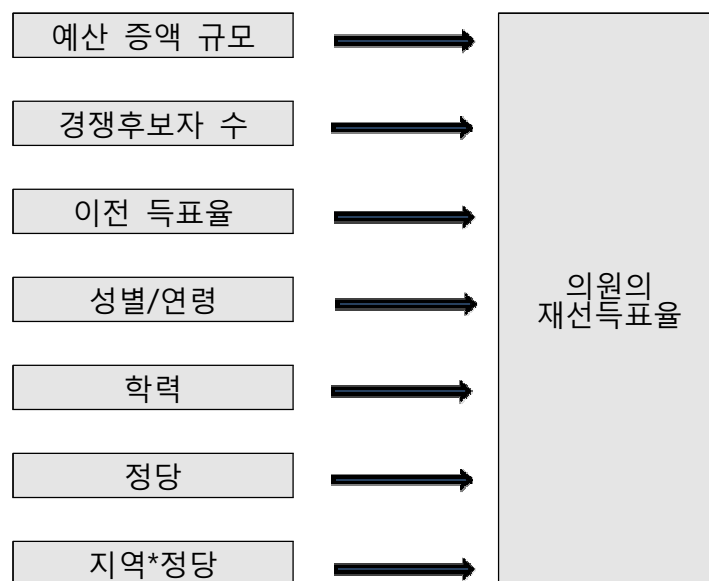
구분	변수	정의	자료출처
종속 변수	득표율	출마자의 득표율	중앙선거관위
독립 변수	예산증액 총 액수	지역별 SOC분야의 국회증액예산의 합으로 2009~2012년의 합계 (선거연도(T-1)~지난 선거 다음 해(T-4))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 예산증액 규모	지역별 SOC분야의 2009년 국회증액예산규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 예산증액 규모	지역별 SOC분야의 2010년 국회증액예산규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 예산증액 규모	지역별 SOC분야의 2011년 국회증액예산규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 예산증액 규모	지역별 SOC분야의 2012년 국회증액예산규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경쟁후보자의 수	경쟁후보자의 수(명)	중앙선거관위
	이전 득표율	18대 총선에서의 득표율	중앙선거관위
	지역더미	경상권이나 전라권인 경우	중앙선거관위
	지역*정당 더미	경상권이면서 새누리당 계열 또는 전라권이면서 민주당 계열인 경우=1, 그 외=0	중앙선거관위
	연령	나이(선거 당시의 나이)	중앙선거관위
	성별	성별(남=1, 여=0)	중앙선거관위
교육수준	교육수준(대졸=1, 그 외=0)	중앙선거관위	

4.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현직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SOC 분야에 대한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규모가 다음 선거의 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예산증액 규모가 가장 핵심적인 독립변수이므로 먼저 <가설 1>에서는 4년 임기 중 예산증액 규모의 총 합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재선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다시 <가설 2>에서는 임기 1년차($t-3$)인 2009년 예산의 증액 규모가 2012년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가설 3>에서는 임기 2년차($t-2$)인 2010년 예산의 증액 규모가 2012년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가설 4>에서는 임기 3년차($t-1$)인 2011년 예산의 증액 규모가 2012년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가설5>에서는 임기 4년차($t-1$)인 2012년 예산의 증액 규모가 2012년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표 16] 연구의 기본적 가설



예산 증액 규모 외에 경쟁후보자 수, 이전 득표율, 성별, 연령, 학력, 정당, 지역*정당 교차변수 등은 독립변수로 하되 가설 1~5까지 동일하게 포함하여 그 영향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정된 가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7] 가설의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가설 1	4년 임기 중 예산 증액 규모의 총 합이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1년차(t-3) 예산 증액 규모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3	2년차(t-2) 예산 증액 규모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4	3년차(t-1) 예산 증액 규모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5	4년차(t) 예산 증액 규모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상관관계 분석

전 장에서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의하여 정리하였으나,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s 상관계수

구분	경쟁후보 자의 수	이전 득표율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새누리당 계열	민주당 계열	영남* 새누리	호남* 민주
이전득표율	0.184*								
성별	-0.056	0.074							
연령	-0.120	-0.214**	-0.058						
교육수준	-0.127	0.085	0.108	0.092					
새누리당 계열	-0.162*	0.208**	0.012	0.117	0.016				
민주당 계열	-0.094	-0.172*	0.026	-0.02	0.019	-0.691**			
영남*새누리	0.049	0.315**	0.125	-0.027	0.06	0.511**	-0.353**		
호남*민주	0.062	0.198*	0.076	-0.058	0.043	-0.343**	0.497**	-0.175*	
2012년 예산증액규모	0.116	0.177*	0.272**	-0.059	0.015	0.102	-0.086	0.396**	0.150

*p<0.05, **p<0.01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회귀분석 수행 시 중요한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 확인에 있다. 상기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전득표율이 새누리당*영남 교차더미 및 민주당*호남 교차더미와 각각 0.315, 0.198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이 관계가 1%와 5%에서 각각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산중액규모가 새누리당*영남교차더미 및 민주당*호남 교차더미와 각각 0.396, 0.150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이 관계가 1%와 10%(p값이 0.62였음)에서 유의미하였음. 이는 정당과 지역의 교차더미들이 주요 독립변수인 이전득표율과 예산중액규모와의 다중공분산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영호남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았을 경우 이들의 이전 득표율은 매우 높고, 또한 임기 중 예산중액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공천이 지역과 결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 효과는 과거 변수로는 이전 득표율, 임기 중 활동을 보여주는 현재 변수로는 예산중액규모를 통하여 득표율에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변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당과 지역의 교차더미를 독립변수에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제2절 분석결과

우선 4년간의 예산 증액규모를 합산하여 1개의 변수로 생성하고 그 외의 변수가 득표율 또는 더미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규모의 로그값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 외 경쟁후보 수, 이전 득표율, 성별, 생년, 학력, 정당 등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F값은 23.8이었고 결정계수는 56.44%이므로 설정한 분석 모형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각 변수별 회귀계수와 유효성을 살펴보면, 절편은 21.6으로 다른 변수의 영향 없이 21.6%의 득표율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경쟁후보 수 역시 1명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3.1%p의 득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역시 매우 유의미하였다.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 역시 1%당 다음 선거에서 0.21%의 득표율을 가산하는 데에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성별과 생년,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4년 간 예산증액규모의 합을 독립변수를 할 경우 회귀분석 결과 요약

F값: 23.8(<.0001), 결정계수: 0.5644

변수	자유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절편	1	21.6202	9.14259	2.36**	0.0193
경쟁후보자의 수	1	-3.1109	0.6419	-4.85**	<.0001
이전 득표율	1	0.21217	0.07468	2.84**	0.0051
성별	1	-1.4092	3.65383	-0.39	0.7003
연령	1	0.06553	0.11844	0.55	0.5809
교육수준	1	0.00236	1.63645	0	0.9989
새누리당 계열	1	20.5983	2.31955	8.88**	<.0001
민주당 계열	1	23.1403	2.43133	9.52**	<.0001
예산증액 총규모	1	0.74547	0.24123	3.09**	0.0024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각 당의 공천을 받아 재출마할 경우 각각 20.6%와 23.1%의 추가득표율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4년간의 예산증액규모의 합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0.75%p의 득표율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왔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산증액규모와 득표율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증액규모의 합을 로그값으로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에서 득표율 증가효과가 급격하다는 점과 통상 증액 단위가 2~3억원 이하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10억원 이하의 증액에 대한 득표율의 영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표 20] 예산증액규모 증가 시 득표율 증가 효과

(단위: 억원, %)

증액 규모	총득표율 증가 효과	10억 증액 시 순증가분
0		
10	10.3	
20	10.82	0.52
30	11.12	0.3
40	11.33	0.21
50	11.5	0.17
60	11.63	0.13
70	11.75	0.12
80	11.85	0.1
90	11.94	0.09
100	12.02	0.08

예산증액규모는 10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 단위별로 측정하였는데, 20억원과 30억 구간에서의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은 각각 0.52%와 0.3%가 증가하였던 반면, 90억원과 100억원 구간에서의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은 0.09%와 0.08%로 증액규모가 증가할수록 증액규모 수준별 득표율의 순증가분은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 자체를 로그값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산증액규모가 산술적으로 크게 증가하면 이로 인한 유권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이미지 등의 효과가 체감할 수 있다는 직관적 상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4년간의 예산증액 규모 간의 공분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예산증액규모라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그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를 단순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선거 당시의 주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에 비록 지역 사업의 유치 또는 규모 확장, 조기추진 등이 인지적 영향을 주기는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4년 동안의 예산증액 규모를 매년 개별적 독립변수로 하여 그 외의 독립변수들과 함께 후보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해보기로 하였다.

2009년~2012년 간 절편의 회귀계수는 22.5~27.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모두 5% 수준 유의미). 역시, 경쟁후보자 수의 경우 2.7~3.1%의 득표율 감소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모두 1% 수준 유의미).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1%당 0.20~0.23%의 득표율 증가 효과를 주는 것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별, 생년, 학력은 기존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득표율에의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변수는 각각 19.7~20.7%, 22.9~23.5%에 걸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1% 수준)을 주었으며, 이는 현직 의원이 정당공천을 통하여 출마한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보다 정당별로 19.7% 내지 23.5%의 추가적인 득표율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각 연도별 예산증액 규모(로그값)였는데, 2009년 예산은 1단위 증액 시 0.26%의 추가득표율을 가져오지만 p값이 0.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10년 예산은 1단위 증액 시 0.43%의 추가득표율을 가져온다는 것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예산 역시 1단위 증액 시 0.52%의 추가득표율을 가져다주는 것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즉, 선거가 열렸던 2012년의 예산을 다루었던 직전 해 예산 심의에서 증액된 경우는 1단위 증액 시 0.73%의 추가득표율을 가져온다는 것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비록 2009년 분석에서는 예산 증액 규모가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3개년인 2010~2012년의 분석에서는 예산증액규모가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2012년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2012년의 연도별 회귀계수가 0.26%에서 0.73%까지 증가하여 증액규모에 따른 추가득표율의 크기가 3배 가까이 확대된다는 점과 p값 역시 0.24부터 0.0001까지 작아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똑같은 규모의 예산증액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가까운 해가 선거시점으로부터 보다 먼 해보다 주민들의 투표행태에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회귀분석 결과 요약

변수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예산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절편	24.14 (9.366)	2.58 (0.011) **	23.192 (9.296)	2.49 (0.014) **	22.518 (9.218)	2.44 (0.016) **	27.481 (9.029)	3.04 (0.003) ***
경쟁 후보자의 수	-2.966 (0.659)	-4.5 (<.0001) ***	-2.929 (0.65)	-4.51 (<.0001) ***	-2.724 (0.647)	-4.21 (<.0001) ***	-3.143 (0.639)	-4.92 (<.0001) ***
이전 득표율	0.23 (0.077)	2.99 (0.003) ***	0.212 (0.076)	2.79 (0.006) ***	0.201 (0.076)	2.66 (0.009) ***	0.195 (0.075)	2.61 (0.01) ***
성별	1.302 (3.629)	0.36 (0.72)	0.619 (3.623)	0.17 (0.865)	0.88 (3.572)	0.25 (0.806)	-1.831 (3.647)	-0.5 (0.616)
연령	0.018 (0.12)	0.15 (0.879)	0.063 (0.122)	0.51 (0.609)	0.055 (0.12)	0.46 (0.644)	0.018 (0.117)	0.16 (0.876)
교육수준	0.69 (1.662)	0.42 (0.679)	0.542 (1.65)	0.33 (0.743)	0.693 (1.63)	0.42 (0.672)	0.906 (1.604)	0.56 (0.573)
새누리당 계열	20.654 (2.394)	8.63 (<.0001) ***	19.711 (2.383)	8.27 (<.0001) ***	20.455 (2.341)	8.74 (<.0001) ***	19.773 (2.312)	8.55 (<.0001) ***
민주당 계열	22.956 (2.496)	9.2 (<.0001) ***	23.008 (2.476)	9.29 (<.0001) ***	23.521 (2.465)	9.54 (<.0001) ***	22.863 (2.417)	9.46 (<.0001) ***
2009년 예산증액 규모	0.256 (0.214)	1.19 (0.235)						
2010년 예산증액 규모			0.432 (0.218)	1.98 (0.05) **				
2011년 예산증액 규모					0.524 (0.205)	2.56 (0.012) **		
2012년 예산증액 규모							0.726 (0.216)	3.37 (0.001) ***
ANOVA	F=21.62 <.0001		F=22.28 (<.0001)		F=22.99 (<.0001)		F=24.29 (<.0001)	
R-Square	0.5405		0.5481		0.5558		0.5693	

*: p<0.1, **: p<0.05, ***: p<0.01

제3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2년(4.11.)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위하여 출마한 경우 18대 회기 동안 해당 지역구의 SOC분야 예산 증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선거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펴낸 19대 국회의원 선거 편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지역구별 SOC분야 예산증액내역은 2009년~2012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SOC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구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5개의 가설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준비된 자료에 대하여는 SAS 9.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경쟁후보자 수,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 성별, 생년, 학력 및 정당, 그리고 연도별 예산증액 규모(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합과 각 개별년도 총 5개) 등 총 11개를 설정하였다.

이 독립변수를 통하여 18대 국회의원의 19대 총선에서의 재선 득표율을 비교해 본 결과 경쟁후보자수, 이전 득표율, 정당(공천 여부)은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4년간 예산증액규모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회귀계수 0.75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예산증액수준별로 10억 원 증액 시 최대 0.52%(총규모 10억원~20억원 구간)의 득표율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과 증액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단위별 추가획득득표율은 체감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 연도별 예산증액규모를 독립변수로 하여 번갈아가며 측정하였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10~2012년 간 연도별 증액규모는 득표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 근접할수록 회귀계수가 0.26에서 0.73까지 증가하고, p값 또한 급격히 작아지는 것으로부터 같은 예산증액규모라고 하더라도 선거가 있었던 해가 선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에 비하여 선거득표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연구의 검증 결과

구분	가설 내용	결과
가설1	4년간의 예산증액규모 합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 수준)
가설2	2009년(t-3) 예산증액규모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2010년(t-2) 예산증액규모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수준)
가설4	2011년(t-1) 예산증액규모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수준)
가설5	2012년(t) 예산증액규모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수준)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4년 동안의 임기 중 해당 지역구의 예산이 증액된 정도에 따라 의원이 재선을 위한 출마 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쟁후보자 수, 성별, 생년, 학력, 정당, 지역과 정당 교차변수 등의 독립변수와 더불어 해당 지역구의 예산증액규모를 4년간의 합 또는 개별적 연도별 증액규모로 번갈아가며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경쟁후보자 수, 이전 득표율, 정당 등은 득표율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외의 성별, 생년, 학력은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해당 지역구의 예산증액규모의 경우 2009~2012년 4년간의 합은 득표율에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년을 제외한 2010~2012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증액 규모 역시 득표율에 5% 수준(2012년은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선거가 속한 해의 해당 지역구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 통상 현직의원인 후보는 선거 당시 유세에서 해당 지역구에 큰 지원을 한 것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은 예산증액과 관련한 언론과 후보의 홍보, 예산증액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대감 등에 기대어 현직의원인 후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인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예산심의 시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쪽지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경쟁에 뛰어드는 행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선거시점에 가까울수록 연도별 예산증액 규모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즉, 회귀계수가 0.26%에서 0.73%까지 급

격히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예산증액규모라고 하더라도 선거가 있었던 해가 선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에 비하여 선거득표율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선을 노리기 위하여 선거가 속한 해의 예산 심의 시 또는 그에 근접한 해에 의원들이 보다 해당 지역구 예산 확보경쟁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제언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증액 내용을 증액의 혜택이 기대되는 지역구 단위로 분석하여 이를 선거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재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 관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탓에 이를 중심적 독립변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종속변수인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학적, 심리학적, 행태학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에 대한 영향요소를 고려할 때 현직효과 등을 빼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독립변수 설정에 보다 심도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재선 득표율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요소보다는 예산증액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 본 논문의 중심점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보고, 또한 결정계수가 60% 정도로 어느 정도 유효하고 의미 있는 모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여러 요소들을 더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국회의 전체 예산증액 내용 중 SOC분야에 국한되어 정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증액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12대 분야 중 환경 분야, 농림 분야, 산업 분야 등은 관련 지역에 해당 분야와 연관된 시설을 건설하거나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기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의원들의 자기 지역 유치에 힘쓰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실적으로 선거 유세 시 또는 상시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는 내용에 속한다. 따라서 엄밀히 예산증액 규모의 영향을 따지려면 SOC분야 외에 전 분야에 걸친 예산증액규모를 기준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고, 분야별로 증액규모가 득표율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증액된 예산이 미치는 영향권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지역구까지를 영향 내에 있는 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히 SOC분야의 경우 도로, 철도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건설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정 지역에 건설되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인근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요 지역 간을 연결하는 SOC예산의 경우 중간지점은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자료 정리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의원은 큰 예산증액 노력 없이도 해당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예산의 증액이 크게 발생하여 득표율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예산증액 사업 수는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영향이 있는 지역구별로 정리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결국 지역구에 귀결되어 선거 결과와의 관계를 검정해보아야 하는 특성 상 많은 표본이 나오기 어려워 향후 충분한 표본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신규사업이 주민들에게 인지되는 효과나 증액 규모별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간관계상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18대나 17대 이상 포괄하여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가 보다 나오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현직효과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선거에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많이 연구되었으나, 현직효과라는 것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부족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SOC분야에 있어 정부안 대비 스스로의 노력에 근거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과 관련한 증액 사실은 규모에 비례하여 주민들의 현직 의원에 대한 투표 경향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앞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의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쪽지예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예산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중 특히 증액과 관련하여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별 배분 등 심의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이러한 “쪽지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 문헌 >

- 가상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1), 2008, pp.33~57
- 강명세,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pp.105~122.
- 강원택, 유권자의 정치 이념과 16대 총선: 지역 균열과 이념 균열의 증첩?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IV: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2003.
- 강장석, “제19대 국회의 실질적 예산안 심의 역량 강화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 2012.
- 김도중·김형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0, pp.105~127.
- 김상현·김민경,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행정논총』, 제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김상현·김형아·김나영,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행정논총』,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김석우, “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6, pp.287~315.
- 김욱,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도서출판 오름, 2006.
- 김재훈·이호준,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12-14, 한국개발연구원,

2012.

박기백·김현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지출”, 『공공경제』, 제10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5.

박명호·김민선,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16~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pp.161~176.

박영희·김중희,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pp.207~208.

박찬욱,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9(2), 1993, pp.1~31.

배상석·강주현, “정부지출이 민선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007.

송근원·정봉성,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과 투표 행태”, 『21세기 정치학회보』 17(1), 2007, pp. 45~70.

엄기홍,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2집 1호, 2012, pp. 229~252.

옥동석, 「국회 재정권한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0, p.65.

유장희, 「예산정책수립과정에서의 의회지원기구의 역할과 정책추세」, 국회예산정책처, 2007, p.16.

윤중빈,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커리어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2000, pp. 146~163.

윤중빈,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2006, pp. 146~164.

이갑윤, “지역주의의 정치적 경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18(2),

2002, pp.155~178.

정구중, “16대 대통령 선거 분석: 정치 변동에서 사회 변동으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도서출판 오름, 2006.

조진만·최준영·가상준,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2006, pp.75~100.

최승범·이환범,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06.

한정택,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7(3), 2007, pp. 73~99.

Brender, Adi, “The Effect of Fiscal Performance on Local Government Election Results in Isra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7, No. 9-10, 2003.

Happy, J. R., “The Effect of Economica and Fiscal Performance on Incumbency Voting: The Canadi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22, No. 1, 1992, pp. 117~130.

Lowry, Robert C., “Fiscal Policy Outcomes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in American State,” *The American of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4, 1998, pp. 759~774.

Park Chan wook,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n Source and Consequences,” *Legislative Studies Quaterly*, Vol 13(2), 1985, pp. 225~242.

Strokes, D. and W. Miller, “Party Government and the Saliency of Congress,” In A. Campbell, P. Converse, W. Miller and D. Strokes(eds.),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New York: Wiley, 1966.

< 첨 부 자 료 >

<별첨 1>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SOC분야(국토부 소관) 사업 내역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일반	기본경비	6,252	649
일반	일반철도시설개량	126,800	2,400
일반	해양문화육성	9,982	200
일반	해양정책 및 산업화 연구	750	100
일반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	3,430	1,000
일반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지자체)	6,962	800
일반	자방대도시권 주변 간선도로망 체계개선 연구용역	0	1,000
일반	화물차 피해보상지원	0	33
일반	새만금 광역교통망 구축	0	500
일반	선원고용복지센터 운영지원	3,073	130
일반	국가하천정비	791,000	
일반	(아산 곡교천)		3,000
일반	(안양천)		3,000
일반	(낙동강 화명지구)		6,000
일반	(낙동강 대저지구)		12,000
일반	(나주 지식천)		3,000
일반	단양수중보 건설		1,000
일반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4,000	2,000
일반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정보화)	7,662	10,000
일반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	2,704	3,000
일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6,100	6,580
일반	연안정비사업	7,490	3,000
일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0,000	20,000
일반	일반국도건설지원	104,802	
교특	(의정부~소홀)		1,000
교특	(단성~시천)		2,000
교특	(예천~지보)		2,000
교특	(고성 죽계~마산 진전)		2,300
교특	(풍산~법전)		2,000
교특	(괴산~괴산IC)		2,000
교특	(화엄사 진입도로)		1,000
교특	(금강하구둑~국립생태원 진입도로)		1,000
교특	(충주~청주 교통체계 연구)		1,000
교특	(익산시계~익산역 국도연장)		500
교특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지원	28,000	
교특	(봉정~방문)		2,000
교특	(용상~교리)		2,000
교특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9,000	

교특	(고서~대덕)		1,000
교특	(북충주IC~가급)		1,000
교특	(울릉도 일주도로)		500
교특	고노~우보 국도건설		1,000
교특	밀양역~삼랑 국도건설		1,000
교특	성남~장호원6 국도건설		1,000
교특	성송~고창 국도건설		2,000
교특	순천승주 우회도로건설		3,000
교특	고현~하동IC 국도건설		2,000
교특	영동~용산 국도건설		3,000
교특	의령~정곡 국도건설		2,000
교특	진관IC~사능IC 국도건설		10,000
교특	춘천-동면 국도건설		1,500
교특	현경~해제 국도건설		7,000
교특	고현~이동 국도건설	1,500	3,500
교특	신갈 우회도로건설	3,014	2,000
교특	신평~우성 국도건설	5,624	4,200
교특	양평~여주 국도건설	2,666	3,000
교특	영인~청북1 국도건설	666	1,000
교특	원청~태안1 국도건설	1,166	2,000
교특	적성~전곡 국도건설	6,058	1,900
교특	다인~비안 국도건설	668	3,000
교특	신령~고노 국도건설	9,046	1,000
교특	태안~보령 국도건설	5,521	3,500
교특	호계~불정 국도건설	11,517	2,000
교특	가흥~상망 국대도건설	6,593	2,000
교특	남면-북면 국대도건설	15,000	3,000
교특	상동-신현 국대도건설	8,593	1,500
교특	양천~월곡 국대도건설	6,499	5,000
교특	기성-원남 지역간선1차	8,316	10,000
교특	아산-천안 지역간선2차	38,737	26,800
교특	둔포-성환 지역간선3차	9,000	1,000
교특	퇴계원-진접 지역간선3차	36,400	3,000
교특	왜관~석적 지역간선4차	15,796	7,200
교특	부여규암 우회 지역간선4차	163	1,000
교특	별교~주암1 지역간선5차	9,700	4,300
교특	화순~광주 지역간선 5차	9,200	4,000
교특	군내-고군 지역간선 5차	5,000	3,000
교특	매방-음봉 물류간선1차	20,000	2,000
교특	아주-상동 물류간선1차	21,168	2,200
교특	음암-성연 물류간선1차	6,000	2,000
교특	장암-자금 물류간선 1차	15,000	5,000
교특	진안-신리 물류간선1차	10,437	1,900
교특	대전 별곡길 광역도로건설		3,000

교특	동부간선 광역도로	20,000	10,000
교특	국도시설개량	90,000	5,000
교특	ITS세계대회지원	600	10,000
교특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17,300	
교특	(서울외곽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300
교특	(서울외곽고속도로 호원IC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		2,000
교특	경춘선 복선전철	290,000	2,500
교특	구로차량기지 이전		2,000
교특	대구선복선전철	5,000	2,000
교특	오리~수원 복선전철	140,000	5,000
교특	원주~강릉 복선전철	10,000	10,000
교특	용인 경전철건설	5,000	2,000
교특	지하철부채상환지원	170,000	40,000
교특	공항소음대책	3,658	15,000
교특	항공우주센터 건립(R&D)		10,000
교특	평택,당진항	39,384	2,000
교특	광양항(지자체)	319	6,400
교특	부산북항 재개발	20,000	5,000
교특	새만금신항 개발	5,000	2,000
교특	서귀포크루즈항건설(민군복합형관광미항)		1,500
교특	일반항 건설	128,661	2,000
교특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5,460	2,000
교특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5,000
교특	이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000
교특	영천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000
교특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2,000
교특	미포국가산단2 진입도로 건설		2,000
교특	진곡산단 진입도로 건설		1,000
균특	송현~남편 국지도건설	4,000	5,000
균특	하천재해예방(제주)	32,000	9,000
균특	하천재해예방	468,000	
균특	(용인 송전천)		3,000
균특	(아산 삼교천)		300
균특	(예산 신양천)		300
균특	(하남 덕풍천)		3,000
균특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2,000	10,000
균특	주거환경개선사업	102,419	800
균특	보령신항 개발		2,000

<별첨 2>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SOC분야(국토부 소관) 사업 내역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일반	도시정책연구(도시공원조성 시범사업)	1,000	1,000
일반	연안관리(지자체)	1,800	200
일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용호만)	4,450	2,000
일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50,000
일반	그린홈건설지원	-	12,000
일반	일반철도시설개량(유등리천교 환경시설 개량)	120,800	300
일반	기관사 인력양성	-	8,784
일반	해양수산연수원 이전	25,000	9,600
일반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8,974	200
일반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보조, 정보화)	7,850	4,000
일반	자동차 및 교통안전 종합연구(중고자동차매매센터 현대화방안)	500	200
일반	낙동강수계광역상수원확보	-	3,000
일반	수자원정책알리기및국제협력	700	300
일반	국가하천정비(원평천)	3,735,000	2,000
일반	지방하천정비	452,550	
일반	(동화천)	-	1,500
일반	(옥수천)	-	2,000
일반	(덕천천)	-	3,500
일반	(괴정천)	-	2,000
일반	(상적천)	-	500
일반	(금토천)	-	500
일반	(수영강)	-	3,500
일반	(봉성포천)	-	2,000
일반	(나진포천)	-	1,800
일반	(계양천)	-	500
일반	(산북천)	-	2,000
일반	(삼교천(홍성))	-	500
일반	(삼교천(예산))	-	1,000
일반	(무안천)	-	2,000
일반	(신양천)	-	500
일반	(용수천)	-	2,000
일반	(송야천)	-	1,500
일반	(용봉천)	-	500
일반	(덕산천)	-	500
일반	(신경천)	-	500
일반	(목리천)	-	500
일반	(기타)	-	90,000
일반	수계치수사업(반변1지구)	221,518	10,000
일반	철도효율화연구개발사업지원	1,000	
일반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	1,000
일반	(역사활용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500
일반	안동댐비상여수로건설	13,000	3,000
교특	냉정-부산고속도로건설	77,000	10,000

교특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100,000	12,000
교특	일반국도건설지원	90,996	
교특	(춘천-홍천 기본설계)	-	500
교특	(기계-안동 기본설계)	-	3,000
교특	(안동-영덕 기본설계)	-	1,000
교특	(충청고속화도로 기본설계)	-	2,000
교특	신평-우성국도건설	18,403	4,000
교특	압해-암태1국도건설	4,519	1,000
교특	압해-암태2국도건설	4,128	1,000
교특	국도 선보상	3,663	
교특	(지도-임자)		1,000
교특	(옥천-도암)		500
교특	내서-칠원지역간선6차건설	4,000	5,000
교특	진주-마산고속도로건설	60,200	10,000
교특	춘천-동면 국도건설	1,215	2,000
교특	다인-비안2국도건설	3,208	2,000
교특	상동-신현국대도건설	11,695	5,000
교특	성남-장호원2지역간선2차건설	33,200	3,000
교특	성남-장호원1지역간선3차건설	30,000	3,000
교특	청평-현리지역간선3차건설	25,000	5,000
교특	용동-장유지역간선3차건설	20,000	5,000
교특	용동-동읍물류간선1차건설	32,000	2,000
교특	기장-장안지역간선5차건설	19,000	5,000
교특	하동-평사리지역간선5차건설	7,000	3,000
교특	아주-상동물류간선1차건설	22,500	7,000
교특	가흥-상망지역간선6차건설	15,000	2,000
교특	도로구조물기능개선(진도대교 성능개선 연구용역)	148,800	1,000
교특	교특회계(도로계정)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출	512	22
교특	호남고속철도건설	250,000	60,000
교특	고속철도 수도권노선 확충사업	-	10,000
교특	성남-여주복선전철	140,000	5,000
교특	울산-포항 복선전철	50,000	2,000
교특	울산신항인입철도	-	2,200
교특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	3,000
교특	서울지하철9호선 2-2단계	3,000	7,000
교특	부산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	1,000
교특	목포신항	15,000	1,000
교특	저상버스도입보조	32,500	5,000
교특	김천-교리1지역간선5차건설	10,000	2,000
교특	쌍림-고령지역간선5차건설	10,000	2,000
교특	고령-성주2지역간선5차건설	16,000	1,000
교특	고령-성주3지역간선5차건설	12,000	1,000
교특	옥계-산동국도건설	7,514	2,000
교특	풍각-화양지역간선5차건설	17,000	2,500
교특	대구지하철2호선연장	30,000	3,000

교특	공항개발조사	1,000	1,000
교특	부산항(지자체)	31,400	8,600
교특	고속도로조사(새만금-포항 타당성조사)	67,470	1,000
교특	영천-언양 고속도로건설	-	2,000
교특	도로건설관리 종합연구(한산대첩교 등 통영권 교통체계 연구)	8,500	1,000
교특	국도27호선-익산역 (장신-송학 국도건설)	-	1,000
교특	의정부-소흘 국도건설	-	1,000
교특	아산-천안 지역간선2차건설	39,000	2,000
교특	부여규암 우회도로건설	22,733	2,000
교특	석문-가곡 지역간선5차건설	23,000	2,000
교특	민자유치건설보조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대체 도로 설계비)	200,600	2,000
교특	도담-영천 복선전철	-	1,000
교특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	1,000
교특	부산신항(1단계)	66,091	20,000
광특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70,000	30,000
광특	동면-장안국지도건설	30,000	5,400
광특	서운-안성국지도건설	20,600	4,000
광특	함안-가야국지도건설	8,000	4,000
광특	성연-운산 국지도건설	2,500	2,000
광특	초지대교-인천 국지도건설	8,000	12,000
광특	표선-성읍국지도건설	10,400	2,000
광특	수원-인천복선전철	100,000	10,000
광특	오리-수원복선전철	120,000	20,000
광특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의왕시 손골취락 도로개설공사)	64,500	2,540
광특	포항영일만 산단진입도로	14,310	1,000
광특	대구테크노폴리스산단진입도로	20,496	19,800
광특	김포양촌산단진입도로	10,491	4,500
광특	단양신소재산단진입도로	3,786	2,100
광특	포항영일만2산단진입도로	13,645	2,000
광특	청주산단진입도로	12,472	5,000
광특	동부간선도로광역도로건설	30,000	13,000
광특	법원-상수국지도건설	15,600	15,000
광특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3,000	2,000
광특	익산산단진입도로	2,200	300
광특	부산-울산 복선전철	100,000	10,000
광특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옥동-농소)	1,000	5,000
광특	내각-오남 국지도건설	3,280	2,000
광특	울릉도일주도로 국지도건설	-	2,000
광특	세지-송현 국지도건설	-	1,000
광특	북충주IC-가금 국지도건설	-	2,000
광특	애월항	-	4,000
광특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낙포-호명)	-	1,000
책특	연안정비(대산청)	3,550	2,450
책특	연금부담금(대산청)	276	25
책특	비인항	4,000	1,000

<별첨 3>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SOC분야(국토부 소관) 사업 내역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일반	연안정비	10,626	
일반	(남항진리 연안정비사업)	(2,000)	(3,000)
일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7,200	
일반	(여수신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2,000)	(4,300)
일반	(부산용호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2,000)	(1,700)
일반	해양관측망구축 및 운영	19,840	5,000
일반	재정비축진시범사업지원	30,000	20,000
일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62,000	5,000
일반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59,000	4,800
일반	선원복지회관 건립지원	1,800	300
일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	885	500
일반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5,895	
일반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건립)	(-)	(2,000)
일반	(2011 해양포럼)	(-)	(150)
일반	해양박물관건립운영(BTL)	8,100	
일반	(부산해양박물관건립운영)	(6,300)	(1,900)
일반	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원	405,500	5,000
일반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사업(R&D)	48,160	
일반	(신개념해수담수)	(-)	(1,000)
일반	교통체계효율화사업	48,441	
일반	(온라인전기자동차)	(-)	(5,000)
일반	낙동강강변여과수사업		3,000
일반	안동댐비상여수로건설	20,000	3,000
일반	지방하천정비	559,000	
일반	(동화천 등)	(-)	(3,000)
일반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지원	800	
일반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300
일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1,300	200
일반	도시정책종합연구	1,000	200
교특	고속도로조사	48,895	
교특	(새만금-전주 설계비)	(-)	(1,700)
교특	주문진-속초고속도로건설	33,000	5,000
교특	영천-연양고속도로건설	-	5,000
교특	진주-마산고속도로건설	71,000	10,000
교특	동해-삼척고속도로건설	25,000	5,000
교특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95,000	30,000
교특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15,000	10,000
교특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	40,000	7,500
교특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	90,000	10,000
교특	일반국도건설지원	80,000	
교특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설계비)	(-)	(3,000)
교특	(옥률-대룡 설계비)	(-)	(1,000)
교특	(남해-여수간 한려대교 기본계획수립)	(-)	(1,000)

교특	(국도34호선 용궁면 산택리-개포면 가곡리 설계비)	(-)	(1,000)
교특	서천IC-판교국도건설	7,531	1,000
교특	음봉-영인국도건설	8,146	1,000
교특	호계-불정국도건설	4,238	1,000
교특	양평-여주국도건설	8,603	3,500
교특	서천-보령3국도건설	2,197	4,000
교특	순천승주우회도로건설	3,836	1,000
교특	의령-정곡 국도건설		1,000
교특	춘천-동면 국도건설	4,869	1,000
교특	부산용상-무거 국도건설		2,000
교특	고현-하동IC2 국도건설	5,529	5,000
교특	다인-비안1국도건설	1,038	5,600
교특	다인-비안2국도건설	7,353	5,600
교특	거제-마산국도건설	2,922	5,000
교특	보령-태안1국도건설	1,340	2,100
교특	보령-태안2국도건설	1,340	2,100
교특	인포-보은1국도건설	3,671	1,000
교특	신장-북용국도77호선건설		2,000
교특	괴산-음성국도건설		2,000
교특	북면-부곡국도건설		1,000
교특	홍해-기계 국도건설	1,932	2,000
교특	영동-추풍령2국도건설	7,424	1,000
교특	장흥-용산 국도건설		1,000
교특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사업		2,000
교특	양천-월곡국대도건설	12,499	1,000
교특	덕례-용강국도건설		2,000
교특	구포-생곡국대도건설		1,000
교특	화성팔탄우회도로	27,000	2,000
교특	성남-장호원1지역간선3차건설	33,000	3,000
교특	성남-장호원2지역간선2차건설	38,000	5,000
교특	장흥송추우회도로지역간선3차건설	18,000	2,000
교특	웅동-장유지역간선3차건설	25,000	2,000
교특	진동-마산지역간선4차건설	22,000	3,000
교특	쌍림-고령지역간선5차건설	12,000	1,000
교특	청양-홍성1지역간선5차건설	11,000	4,000
교특	청양-홍성2지역간선5차건설	10,000	4,000
교특	소천-서면1지역간선5차건설	13,000	3,000
교특	소천-서면2지역간선5차건설	13,000	3,000
교특	소천-서면3지역간선5차건설	13,000	4,000
교특	배방-음봉물류간선1차건설	20,000	5,000
교특	농소-어모물류간선1차건설	17,000	1,000
교특	분천-송산물류간선1차건설	20,000	1,000
교특	집현-유곡물류간선1차건설	10,000	1,000
교특	장암-자금물류간선1차건설	15,000	2,000
교특	서천-보령1지역간선6차건설	7,000	1,000
교특	도로병목지점 개선	101,960	

교특	(대천삼거리 교차로 개선)	(-)	(1,000)
교특	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지원	8,000	
교특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8,000)	(3,000)
교특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	(2,000)
교특	성남-여주복선전철	145,000	5,000
교특	포항-삼척철도건설		70,000
교특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8,000	2,000
교특	원주-강릉 철도건설	26,000	4,000
교특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00
교특	보성-임성간 철도건설		1,000
교특	구로차량기지이전		1,000
교특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142,000	10,000
교특	마-창-진 도시철도건설		1,000
교특	부산도시철도1호선양산선(노포~북정) 건설		2,000
교특	지하철부채상환지원	135,030	5,000
교특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건설		500
교특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기본조사		1,000
교특	부산신항(2단계)	17,202	3,000
교특	목포신항	14,508	2,500
교특	일반항	146,880	
교특	(연평도항)	(-)	(2,200)
교특	(백령도 용기포항)	(-)	(3,500)
교특	마산항 진입도로	7,244	4,000
교특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계상)	13,850	
교특	(마산항제4부두 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	(-)	(1,000)
교특	부산북항 재개발	20,000	10,000
교특	재해안전항만구축(마산구항 친수공간조성사업)		2,000
교특	항만보안시설 확충		5,000
교특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9,050	
교특	(선외기국산화개발사업 R&D)	(-)	(600)
광특	지역거점조성 지원	157,545	
광특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55,971)	(1,000)
광특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15,000
광특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건설	900	1,100
광특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		9,900
광특	동면-장안국지도건설	16,500	13,000
광특	서운-안성국지도건설	18,000	3,000
광특	법원-상수국지도건설	13,800	2,000
광특	남일-문의국지도건설	7,250	2,000
광특	장기-남면2차국지도건설	3,000	3,600
광특	가창-각남국지도건설	3,800	2,000
광특	양산-동면국지도건설	6,800	3,400
광특	성연-운산 국지도건설	2,500	2,000
광특	몽탄-동강국지도건설	1,000	1,000
광특	울릉도일주국지도건설	2,000	5,000
광특	농암-산양국지도건설	1,000	1,000

광특	통영미수-무전 국지도 건설		3,000
광특	합덕-우강국지도건설	8,500	2,000
광특	왜관-가산 국지도건설	3,400	1,000
광특	수원-인천복선전철	130,000	15,000
광특	오리-수원복선전철(분당선 연장)	130,000	10,000
광특	별내선 복선전철	1,000	500
광특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광특	(산성터(금정측) 접속도 설계비)	(-)	(2,000)
광특	산성터(화명측)접속도로건설		3,000
광특	광주북부순환도로		3,000
광특	조치원전의산단진입도로	10,470	4,700
광특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200,000	50,000
광특	성서5차산단진입도로	3,318	1,900
광특	대구테크노폴리스산단진입도로	27,557	2,400
광특	당진송산산단진입도로	17,755	2,200
광특	강릉옥계산단진입도로		1,000
광특	예산산단진입도로		1,500
광특	홍성산단진입도로		1,500
광특	아산탕정2산단진입도로	1,500	1,000
광특	밀양용전산단진입도로	1,500	1,000
광특	창녕대합산단진입도로	1,200	1,300
광특	부산명례산단진입도로	2,000	500
광특	파주월릉산단진입도로	12,720	2,280
광특	진천산수산단진입도로		1,500
책특	연안정비(대산청)	5,410	1,600
책특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계상)	20	1,349

<별첨 4>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SOC분야(국토부 소관) 사업 내역

회계	사 업 명	정부안	증액
일반	재정비축진시범사업지원	65,000	20,000
일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74,000	
일반	(부산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도시가스 난방공사)		500
일반	(서울 노원 중계 9단지 시설개선)		2,000
일반	주택공시가격조사	53,448	850
일반	국토공간기반조성(3차원공간정보구축)	14,898	300
일반	지적구축(보조)	1,540	1,500
일반	섬진강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11	300
일반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세계물포럼)	830	1,000
일반	섬진강댐재개발	35,000	5,000
일반	주암댐치수능력증대	10,000	3,000
일반	국가하천정비사업(광주 승촌보 제방도로)	720,500	3,000
일반	지방하천정비사업	760,000	
일반	(대구 옥수천)	1,100	1,600
일반	(부산 수영강)		1,000
일반	(경기 고양 공릉천)	900	1,000
일반	(경기 고양 도촌천)	1,800	5,000
일반	(경기 구리 왕숙천)		1,000
일반	(경남 김해 대청천)	1,800	1,000
일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500	5,000
일반	노후공단재정비 지원		
일반	(대구 노후공단 재정비)		2,000
일반	(대전 노후공단 재정비)		2,000
일반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1,500	10,000
일반	철도산업발전지원	829	
일반	(광주-순천 철도건설 사전조사 용역비)		500
일반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전조사 용역비)		1,000
일반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교통체계개선 용역)	1,800	300
일반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2,200	1,500
일반	울산신항(남방과제(2단계))	105,966	4,000
일반	연안정비	20,462	
일반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1,000
일반	(여수만흥지구)		1,200
일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	94,425	10,000
일반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14,050	
일반	(부산송도 연안유희지 공간 활용)	1,000	500
일반	(세계해양포럼)	190	260
일반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 사업)	400	600
일반	(남한강(여주)수상레포츠 교육시설 설치)		1,500
일반	(거례 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		1,500
일반	(여수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500

일반	(광양시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		700
일반	(고흥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공간 활용)		1,000
일반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400	800
일반	(부산 장림포구 연안해역 생태적 재개발사업)		200
일반	(마리나산업 홍보 및 해외협력)		2,000
일반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부산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3,865	500
교특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8,000	
교특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8,000	10,000
교특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20,000
교특	고속도로조사	71,840	
교특	(당진-천안 실시설계비)	2,200	1,800
교특	(성서-지천 타당성조사)		600
교특	냉정-부산 고속도로	171,100	20,000
교특	함양-울산 고속도로		500
교특	성서-지천 고속도로		600
교특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120,000	20,000
교특	화도-양평 고속도로		2,000
교특	상주-영덕 고속도로	180,000	10,000
교특	진접-내촌 국도건설사업		2,000
교특	의정부-소흘 국도건설사업	5,117	2,000
교특	퇴계원-진접 국도건설사업	35,000	10,000
교특	일반국도 건설지원	86,906	
교특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4,000	5,000
교특	(용궁-개포 실시설계비)		400
교특	(청송우회도로 실시설계비)		1,000
교특	(안동-영덕 실시설계비)		1,000
교특	(대덕-용산 실시설계비)		1,000
교특	(도계-진천 기본설계비)		1,000
교특	(남당항 실시설계비)		200
교특	(서산-황금산 실시설계비)		300
교특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		1,000
교특	주상-한기리 국도3로선 건설		1,000
교특	괴산-음성 국도건설사업		2,000
교특	국도건설사업(서원-공근)		1,000
교특	지도-임자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기계-안동4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춘천-동면 일반국도건설 춘천-철원 확포장	5,285	2,000
교특	덕례-용강 일반국도건설	3,623	1,000
교특	옥천-도암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보령-태안1 일반국도건설	8,978	1,500
교특	보령-태안2 일반국도건설	6,480	1,500
교특	괴산-괴산IC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막동-나전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다인-비안1 일반국도건설	8,011	1,000

교특	다인-비안2 일반국도건설	11,701	2,000
교특	화양-적금1 국도건설	4,531	1,500
교특	화양-적금2 국도건설	4,650	1,500
교특	화양-적금3 국도건설	4,576	1,500
교특	화양-적금4 국도건설	2,328	1,500
교특	북면-부곡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하동-화개 일반국도건설		2,000
교특	고현-하동IC2 국도건설	9,630	2,000
교특	남원-곡성 지역간선4차건설	17,100	3,000
교특	호계-불정 지역간선7차건설	13,000	2,000
교특	서면-근남1 지역간선5차건설	11,000	1,000
교특	서면-근남2 지역간선5차건설	11,000	1,000
교특	소천-서면1 지역간선5차건설	19,000	1,000
교특	소천-서면2 지역간선5차건설	19,000	1,000
교특	소천-서면3 지역간선5차건설	20,000	1,000
교특	농소-어모 물류간선1차건설	13,000	2,000
교특	진안-신리 물류간선1차건설	19,000	6,000
교특	내서-칠원 지역간선6차건설	14,000	1,000
교특	고하-죽교 지역간선3차건설	25,000	5,000
교특	진동-마산 지역간선4차건설	20,000	2,000
교특	청양-우성1 지역간선5차건설	14,000	2,000
교특	청양-우성2 지역간선5차건설	14,000	2,000
교특	대산-석문 지역간선5차건설	16,000	2,000
교특	석문-가곡 지역간선5차건설	14,000	2,000
교특	청양-홍성2 지역간선5차건설	15,000	2,500
교특	인화-강화 지역간선5차건설	11,000	3,000
교특	서천판교우회도로(갈산-해미) 지역간선4차건설	14,000	2,000
교특	신갈우회 지역간선6차건설	12,000	2,000
교특	부산시계-웅상1지역간선6차건설	12,000	2,000
교특	부산시계-웅상2지역간선7차건설	12,000	2,000
교특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지원(상구-효현 실시설계비)	19,400	1,000
교특	귀곡-행암 국대도건설		2,000
교특	염성-용두 국대도건설		2,000
교특	구포-생곡 국대도건설	4,424	5,000
교특	원당-관산 국대도건설	3,534	3,000
교특	집현-유곡 물류간선1차	11,000	1,000
교특	삼가-대촌 지역간선6차 건설	10,000	2,000
교특	위험도로 개선사업(국도 2호선 고흥군 금산면 위험도로 구간 선형개량)	60,000	1,000
교특	도로병목지점개선	116,000	
교특	(사천시 송포교차로 국도건설사업)		1,000
교특	(안동시 강남동 수상-신석 횡단교량)		1,000
교특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05,198	
교특	민자유치건설보조금(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10,000
교특	민자유치건설보조금(서울외곽순환 호원IC 건설)		2,000

교특	첨단교통체계(보조)(1736-305)	38,900	
교특	(인천광역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		1,000
교특	(광주광역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1,000
교특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6,779	
교특	(양촌IC-가야곡 실시설계비)		200
교특	(법성-홍농 실시설계비)		200
교특	(쌍백-봉수 실시설계비)		200
교특	(단산-부석사 실시설계비)		500
교특	(오남-수동 실시설계비)		200
교특	(와부-설악 실시설계비)		200
교특	(청도-운문터널 실시설계비)		200
교특	KTX 광주역 연결선		5,000
교특	호남고속철도 건설	750,000	30,000
교특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철도건설		5,000
교특	대구선 복선전철	30,000	10,000
교특	도담-영천 복선전철	40,000	10,000
교특	울산신항 인입철도	4,000	2,000
교특	부산-울산 복선전철	110,000	14,000
교특	수송차량구입	37,932	1,000
광특	소사-대곡 복선전철		2,000
교특	이천-충주-문경 복선전철		2,000
교특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5,000
교특	광역BIS지원(보조)(광주광역시)	5,000	1,000
교특	부산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2,000	3,000
교특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2,000
교특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13,400	5,000
교특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환승체계구축)	156,022	1,000
교특	신림선 경전철 건설		2,000
교특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서울7호선 용마산역)	27,500	500
교특	부산항 신항(1단계)	39,188	2,600
교특	부산항	81,751	3,400
교특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30,000	4,000
교특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36,000	9,000
교특	일반항	87,004	
교특	(비인항)	4,360	200
교특	(여수신항 2단계)		3,000
교특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11,920	2,959
광특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9,800	
광특	(대구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3,000
광특	(부산 기장 청강공원조성)		880
광특	대구테크노산단진입도로	33,147	20,000
광특	김해산단진입도로	15,364	2,700
광특	미포2산단진입도로	11,195	2,000
광특	울산반천산단진입도로	1,200	800

광특	논산동산산단진입도로	1,000	1,000
광특	보은동부산단진입도로		1,000
광특	미포국가산단진입도로(정자-국도31호선)		2,000
광특	김포학운2산업단지 진입도로	1,000	1,000
광특	대구시계-고령 개진 국지도건설		2,000
광특	본덕-임곡2 국지도건설	14,500	2,000
광특	동명-부계 국지도건설	17,800	1,200
광특	생림-상동 국지도건설	12,000	2,000
광특	초지대교-인천2 국지도건설	10,000	1,000
광특	농암-산양 국지도건설	4,000	3,000
광특	동탄-기흥2 국지도건설	10,000	2,000
광특	반곡-남산 국지도건설		2,000
광특	봉강-무안 국지도건설		1,500
광특	입고-조교 국지도건설		1,500
광특	칠북-북면 국지도건설		2,000
광특	도척-실촌 국지도건설		1,500
광특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건설		1,500
광특	금고-비산 국지도건설		2,000
광특	서운-안성 국지도건설	15,000	6,000
광특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12,000	2,000
광특	덕양-용미 국지도건설	8,000	2,000
광특	장안-임랑 국지도건설	5,000	2,000
광특	동읍-한림 국지도건설	14,000	2,000
광특	미수-무전 국지도건설	5,000	2,000
광특	화명동-양산 광역도로	12,000	3,000
광특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사업	15,000	3,000
광특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	15,000	2,000
광특	산성터널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	12,000	1,000
광특	진접선(당고개-진접) 건설		2,000
광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5,000
책특	대산항(1-2단계) 건설사업(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6,647	1,300

【Abstract】

The Effect of Regional Budget Increase
on Reelection of Congressmen
- Focused on SOC sector

Kim Se-Hwa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regional budget increase on reelection of congressmen.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FY 2009~2012 budget proposals approved and adjusted by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of National assembly and classify budget increase scales of SOC project into regions and analyze the effect of regional budget increase on reelection and vote share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or 18th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findings show that budget increase leads to the increase of vote share. We conclude that budget increase affects on behavior of congressmen, but the level of that is somewhat limited.

Keywords : Budget increase, incumbency advantag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vote share

Student Number : 2012-21920